

# 제6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2021. 6. 23.(수) 10:00 제 3 차 본 회 의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사보고서

# 행정복지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758 2021년 6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 5. 28.

나.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장

다. 회부일자: 2021. 5. 31.

라. 상정일자: 2021. 6. 15.

마. 의결일자: 2021. 6. 15.

-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바. 의결결과: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의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도로관리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21년도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등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 다. 그 밖의 사항
- 1) 신·구조문대비표
- 2) 입법예고: 2021. 5. 20. ~ 2021. 5. 24.(4일) 결과, 특이사항 없음
- 3)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2021. 5. 20. ~ 2021. 5. 24.(4일)
- 나) 협의결과
  -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규제개혁법무담당관-5342(2021.5.21.)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5343(2021.5.21.)
  -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여성가족과-9326(2021.5.21.)
- 4) 비용추계 현황: 비용추계서
- 5) 정책조정회의 심의 여부: 해당 없음
- 6)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규제개혁법무담당관-5610(2021.5.28.)
- 7) 관계 중앙부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4. 검토의견

#### 가. 개정취지

-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의 행정사무를 조정하고,
-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 신설 및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2021년도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소속기관(안 제2조)

○ 안 제2조 소속기관에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을 신설하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함

# 2) 직제 순 변경(안 제7조, 제8조)

○ 투자유치 확대, 일자리 창출, 상권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부시장 사무 중 경제산업국을 직제상 1국으로 변경

# 3) 문화체육관광국 및 시립도서관 사무 조정(안 제14조, 제40조의8)

- '21.10월 개관 예정인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정책업무는 본청(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무는 시립 도서관에 이관하고자, 「지방자치법」제114조¹)에 의거 시립도서관이 설치됨에 따라,
-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소관 사무에서 도서관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변경하고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음
- 안 제40조의8에서는 시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과 해당 소관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음

# 4) 도시성장본부 및 환경녹지국 사무 조정(안 제15조 및 제17조)

○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을 도시성장본부에서 환경 녹지국 사무로 조정하고자,

<sup>1)</sup> 지방자치법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안 제15조 도시성장본부장의 사무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 환경녹지국장의 사무에는 안 제17조제5호를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으로 신설함
- 또한, 안 제17조제7호 환경녹지국장의 사무에 중앙공원관리사업 소가 공원관리사업소로 기관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 5) 건설교통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사무 조정(안 제16조, 제40조의5)

-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정책업무는 본청 (도로과)에서, 도로유지관리업무는 사업소에 이관하고자,「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의거 도로관리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
- 안 제16조에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소관 사무에서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 안 제40조의5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해당 소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음

# 6) 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조정(안 제22조)

- 안 제22조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사무에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음
-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와 함께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였으나, 「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제1항2)에 따른 사무만 하도록 함

# 7) 시설관리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안 제35조, 제40조의2)

- 그동안 도시공원(중앙공원 및 호수공원 제외) 관리는 시설관리사업 소에서, 중앙공원 및 호수공원 관리는 중앙공원사업소에서 각각 관리하였으나, 공원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35조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 중 도시공원 관리 업무를 삭제하였음
- 안 제40조의2에서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중앙공원과 호수 공원 관리 업무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관리로 변경함

# 8) 경제산업국 사무 조정(안 제13조)

○ 안 제13조제6호에 농지관리 사무를, 제7호에는 농식품산업 사무를, 제8호에는 동물복지, 동물방역 사무를 각각 추가하였음

#### 9) 시 공무원 정원 증원(안 제46조 및 별표5)

○ 안 제46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여 7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현행 2,374명의 총 정원이 2.450명으로 변경됨

조례안 정원	현행	개정안	증가	증가율
포네한 경편	2,374명	2,450명	76명	3.2%

○ 76명 순증은 본청 22명, 직속기관 6명, 사업소 19명, 읍·면·동 29명 등 집행기관 76명 증원사항이 반영된 것임

<sup>2)</sup>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sup>1.「</sup>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sup>2. 「</sup>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sup>3.</sup>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점검에 과한 사항

<sup>4.</sup>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일반직	소방직	지도・연구	정무・별정
현 행	2,374	1,743	550	69	12
변경	2,450	1,818	550	70	12
증 감	+76	+75	-	+1	-

#### 10) 부칙 개정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19. 7. 30일자로 자율신설기구로 설치되었던 문화체육관광국의 존속기한을 '23. 7. 29.까지로 2년간 연장함을 명시하였음

# 111) 별표1, 별표5

- 별표1(통합보건지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남부통합보건지소 관할 구역에 집현동, 해밀동, 산울동, 합강동 추가
- 별표5(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정원 76명 순증 반영

# 12) 기타 사항(「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예정)내용)

#### ① 부서·담당·사업소·동 신설

- 부서(+1): 동물위생방역과 신설
- 담당(+13): 행복도시출범10주년TF, 장욱진기념관건립TF, 노인시설, 바이오산업, 소상공인정책, 농식품산업, 동물복지, 동물방역, 도시행정, 성장관리, 국가시범도시, 부동산조사TF, 산지관리
- 사업소(+2): 도로관리사업소, 세종시립도서관 신설
- 동(+2): 반곡동, 해밀동 신설

#### ② 담당 이관

- 투자유치: 기업지원과 → 투자유치과

- 농지관리: 로컬푸드과 → 농업정책과

- 축산: 농업정책과 → 동물위생방역과

- 도시개발, 개발행위: 도시정책과 → 도시개발과

#### ③ 사무 이관

- 행복·세종협의회 운영: 행정도시지원과 → 정책기획관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수리 등: 토지정보과 → 읍·면·동

- 시도·도시계획도로·농어촌도로 보수, 제설 등 유지·관리: 조치원읍, 아름동 → 도로관리사업소
-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마을방송시설 유지관리: 정보통계담당관 → 조치원읍

# ④ 명칭 변경

구 분	기 존	변 경(안)	비고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기능강화	
6세간 비취	농업축산과	농업정책과	동물보호, 축산기능 강화	
동물위생방역과	축산(농업축산과)	청정축산	축산기능 강화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도시개발과	도시개발 중심 편재	
예산담당관	재정평가	재정관리	중기재정계획 재정분석 등 수행	
에만ㅁ٥만	재정관리	국비	국비확보 전담	
자치분권과	자치경찰준비단TF	자치경찰협력	자치경찰 본격시행	
스마트도시과	스마트시티	시티스마트	접근방법 변경 (HW→SW)	
산림공원과	도시공원조성(행정도시지원과)	도시공원	공원관리 일원화	
보건소	건강관리(남부통합보건지소)	생활건강	구강보건사업 업무 추가	
	상하수도시설과	상수도시설과/하수도시설과		
시설관리사업소	급수관리(상하수도시설과)	상수급수(상수도시설과)	상하수도시설과 분리	
	정수관리(상하수도시설과)	수도시설(상수도시설과)		

구 분	기 존	변 경(안)	비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조경녹지(중앙공원관리사업소)	공원조경(공원관리과)	공원관리 일원화
8 년년디지 답고	공원시설(중앙공원관리사업소)	공원시설(공원관리과)	일원화
	공원시설(녹지관리과)	녹지시설	

#### ⑤ 일반직 직급별 정원

일	반 직	계	3급 이상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햔	행	1,743	10	1	56	1	251	1,424
변	경	1,818	10	1	59	1	266	1,481
증	감	+75	-	-	+3	-	+15	+57

# 다. 종합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체계적 업무추진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통보한 2021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 행정사무 조정, 공원 관리 일원화를 위한 공원관리사업소로 명칭 변경, 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사업소로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 설치 등이 주용 개정 내용이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사이동, 사무실 변경, 청사안내문 정비, 예산 배분 등 업무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임

5. 토론: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없음

9. 기탁사항: 없음

# 첨부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중앙 공원관리사업소를"을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및 세종특별자치시시립 도서관을"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을 "보건복지국,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4조,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2조)제4호 중 "도서관"을 "독서문화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

제13조(종전의 제14조)제6호 중 "농업기반"을 "농업기반, 농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축산, 가축방역"을 "동물복지, 동물방역, 청정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8호) 중 "농지관리"를 "농식품산업"으로 한다.

제15조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8호 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16조제9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도로관리사업소 사무"로 한다.

제17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5. 공원녹지의 확충 · 관리 · 이용에 관한 사항

제22조제2호 중 "사항을 포함한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35조 중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도시공원(중앙공원 및 호수 공원은 제외한다)"을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0조의2 중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을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0조의3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0조의4 중 "중앙공원관리사업소"를 "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

제4장제4절(제40조의5부터 제40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절 도로관리사업소

- 제40조의5(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도로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 제40조의6(소장) 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0조의7(하부조직 등) 도로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제5절(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절 시립도서관

- 제40조의8(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한다.
- 제40조의9(관장) 시립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0조의10(하부조직 등) 시립도서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74명"을 "2,4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51명"을 "1,827명"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한 문화체육관광국의 존속기한 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한다.

# [별표 1]

# 통합보건지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4조제3항 관련)

# 1. 통합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비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새롬로 14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반곡동, 집현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해밀동, 산울동, 합강동	

# 2. 보건지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비고
연기면 보건지소	연기면 당산로 81	연기면	
연동면 보건지소	연동면 장욱진로 7	연동면	
부강면 보건지소	부강면 부강5길 38	부강면	
금남면 보건지소	금남면 용포로 59	금남면	
장군면 보건지소	장군면 장척로 398-3	장군면	
연서면 보건지소	연서면 대첩로 238	연서면	
전의면 보건지소	전의면 만세길 20-12	전의면	
전동면 보건지소	전동면 운주산로 386	전동면	
소정면 보건지소	소정면 소정구길 201	소정면	

# 3. 보건진료소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응암 보건진료소	연동면 송암로 246	응암 1, 2, 3, 4리, 노송 1, 2리
황용 보건진료소	금남면 금남구즉로 487	황용 1, 2리, 달전리, 영대 1, 2리, 대박리, 부용 1, 2리, 박산리, 남곡리
송학 보건진료소	장군면 황미창말길 5-4	송학 1, 2리, 용현리, 태산리, 용암 1, 2리
와촌 보건진료소	연서면 용연로 635	와촌 1, 2, 3리, 부동리
쌍류 보건진료소	연서면 도신고복로 427	쌍류리, 청라 1, 2리, 용암리
양곡 보건진료소	전의면 양지편길 17	양곡 1, 2리, 영당리, 달전 1, 2리, 금사리, 다방 1, 2리, 신방 1리
송곡 보건진료소	전동면 금이로 184	보덕 1리 송곡 1, 2리, 송정 1, 2리

# 4. 건강생활지원센터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64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반곡동, 집현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해밀동, 산울동, 합강동

[별표 5] **정원 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8조제1항 관련)

직 -	 급 별	7	기 관	<u></u>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 의 제 행정기관	읍면동
考	日	<u>.</u>		계	2,450			기원	_	8010	
	무		<b>z</b> 1			1				1	
정 기	Т		직	계 기	2	1				1	
시	.1	٥١	٥١	장	1	1				-	
감	사	위	원	장	1					1	
일	반	직		계	1,818				_		I
2	급	•	3	급	2	1	1				
3				급	8	7		1			
3	급	٠	4	급	1	1					
4				급	59	47	3	2	4	1	2
4	급	٠	5	급	1				1		
5	급	d	)	하	1,740						
전	문	경	력	관	7						
연	구	직		계	37				-		
연		구		관	3	1		2			
연		구		사	34						_
지	도	직		계	33				-		
지		도		관	4			4			
지		도		사	29						_
소	방	직		계	550				_		
소	방		준	감							
소		방		정	3	1		2			
소	방 i	 청	0]	하	547		I			I	_
별	정	직		계	10				-		
1	급	ر	A-	당	1	1					
4	급		상 -	당	4	2	2				
5 1	급 상		0]		5						_

<sup>※</sup> 일반직 3급 중 1명은 한시정원으로 함

# 첨부 2 / 신·구조문 대비표

	_1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생 략)	제2조(소속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	②
기 위하여 사업소로 세종특별자	
치시시설관리사업소, <u>세종특별</u>	<u>세종특별자</u>
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및 세종	치시공공건설사업소, 세종특별
특별자치시중앙공원관리사업소	자치시공원관리사업소, 세종특
<u>를</u> 둔다.	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및 세
	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을
제7조(부시장) ①・② (생 략)	제7조(부시장) ①・② (현행과 같
	<u> </u>
③ 경제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	③
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	
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1.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	
관 업무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제8조(실·국·본부의 설치) ① -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	
여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자	
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보	<u>보건복지국, 경제산업</u>

건복지국, 경제산업국, 도시성 국, 문화체육관광국-----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 국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 제14조(문화체육관광국) -----관광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분장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학 교폭력대책, 도서관, 행복교육 ----- 독서문화 진흥---지원센터 및 대학유치 ·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5. 시립도서관 사무의 기획・조 정 및 지도・감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3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4조(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 제13조(경제산업국)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원예 6. ---------- 농업기반, 농지관리--· 특작,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7. 축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8. 동물복지, 동물방역, 청정축 산----8. 농산물유통, 로컬푸드 육성, 7. -----6차 산업, 농지관리에 관한 사 ----- 농식품산업-----

o}-	
9. • 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15조(도시성장본부) 도시성장본	제15조(도시성장본부)
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	
장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0.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	<u>&lt;삭 제&gt;</u>
용에 관한 사항	
<u>11</u> . ~ <u>14</u> . (생 략)	<u>8</u> . ~ <u>11</u> . (현행 제11호부터 제14
	호까지와 같음)
제16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제16조(건설교통국)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공건설사업소 사무(복합커	9
뮤니티센터에 관한 사무는 <u>제</u>	<u>제</u>
<u>외한다)</u> 의 기획·조정 및 지도	외한다) 및 도로관리사업소 사
• 감독	<u>무</u>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17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제17조(환경녹지국)
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
	용에 관한 사항
<u>5</u> .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u>6</u> . 시설관리사업소 및 <u>중앙공원</u>	7 공원관리
	 사업소
 및 지도·감독	
<u>7</u> . (생 략)	<u>8</u> . (현행 제7호와 같음)
제22조(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각	제22조(소관사무)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동물위생시험소법」제5조	2
제1항 각 호의 <u>사항을 포함한</u>	<u>사항</u>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제35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제35조(설치)
문화시설 • 체육시설 • 복지시설	문화시설ㆍ체육시설ㆍ복지시설
•도시공원(중앙공원 및 호수공	
<u>원은 제외한다)</u> 및 상하수도시	
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한	
다.	
제3절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제3절 <u>공원관리사업소</u>
제40조의2(설치) 법 제114조에 따	제40조의2(설치)
라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의 효율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u>중앙</u>	<u>공원</u>
<u>공원관리사업소</u> 를 설치한다.	<u>관리사업소</u>
제40조의3(소장) <u>중앙공원관리사</u>	제40조의3(소장) <u>공원관리사업소</u>
<u>업소</u> 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	
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	
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한다.	
제40조의4(하부조직 등) <u>중앙공원</u>	제40조의4(하부조직 등) <u>공원관리</u>
<u>관리사업소</u> 의 하부조직 및 분장	<u>사업소</u>
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u>.</u>
<u> &lt;신 설&gt;</u>	제4절 도로관리사업소
<u>&lt;신 설&gt;</u>	제40조의5(설치) 법 제114조에 따
	라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의 효율
	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에 도로
	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
<u>&lt;신 설&gt;</u>	제40조의6(소장) 도로관리사업소
	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
	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
	<u>다.</u>
<u>&lt;신 설&gt;</u>	제40조의7(하부조직 등) 도로관리
	사업소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u>한다.</u>
<u>&lt;신 설&gt;</u>	제5절 시립도서관
<u>&lt;신 설&gt;</u>	제40조의8(설치) 법 제114조에 따
	라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
	하여 시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한
	<u>다.</u>
<u>&lt;신 설&gt;</u>	제40조의9(관장) 시립도서관에 관
	<u>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u>

# <u><신 설></u>

- 제46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2,374명</u>이며, 다 음 각 호와 같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1,751명
  - 2. ~ 4. (생 략)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		
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0조의10(하부조직 등) 시립도		
서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u>한다.</u>		
제46조(정원의 총수)		
<u>2,450명</u>		
1		
- <u>1,827명</u>		
9 ∼ 4 (첨해고 가스)		